보건복지부	보 도 자 료 2월 28일(금) 조간 (2.27. 12시 이후 보도)		
배 포 일	2020. 2. 27. / (총 8매)	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과 장	김 우 기	전 화	044-202-3190
담 당 자	여 정 현 / 변 광 용		044-202-3384 / 3388

2019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 적발!

- 2018년 대비 적발 인원 55% 감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결과 공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아동관련기관**(총 32만8298개)의 **운영·취업자 216만 771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4.9.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는 그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된다.

*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붙임4)

**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확정된 사람 중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 또는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불가(붙임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9명**에 대해서는 **아동관련기관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 폐쇄·취업자 해임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다.

* 점검방법 :「아동복지법」제29조의4 및 제68조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찰서로 시설 운영자·취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붙임2)**

**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가 △**운영자**인 경우 **시설 폐쇄** △**취업자**인 경우 **해임조치**

○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아동복지법」개정으로 '18년부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점검 의무화 ('17.12.20. 시행)

○ 이는 **'아동학대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기 전에, 기관의 장이 대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 **취업제한 기간 중이라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 **일제 점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4명 △취업자인** 경우는 **5명**이었다.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4명**(운영자 3, 취업자1) **△교육시설 3명**(취업자 3) **△의료시설 2명**(운영자 1, 취업자 1) **순으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1건은 예정)· **취업자 해임 조치를 하였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및 제75조의 취업제한 조치 절차

① 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의 폐쇄·해임 요구 → ② 아동관련기관 장의 이행 또는 불이행 → ③ 불이행 시 지자체장 등의 등록·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처분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

구분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기관수	인원			조치완료	조치예정
		계	운영자	취업자		
계	9	9	4	5	8	1
체육시설	4	4	3	1	3	1
교육시설	3	3	0	3	3	0
의료시설	2	2	1	1	2	0

□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ncrc.or.kr)에 **2월 2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 지원, 사업평가 등의 업무 수행(아동복지법 제10조의2)

** △점검기간·기관·인원 수 △적발기관 개수 ·명칭·대상자 수 △조치한 내용 등을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7)

□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 붙임 >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 **(내용)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 **(취지)**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하여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

○ **(대상)**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중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받은 사람**

○ **(제한 기관)**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아동관련시설·기관

○ **(제한 기간)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선고*** ('19.6.12일부터 적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7호,18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7헌마130) 후 **개정**됨(법률 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시행 2019.6.12.)

- 다만, **법률 개정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 △3년초과 ☞ 형종료/집행유예·면제날부터 5년
  │ △3년이하 ☞ 형종료/집행유예·면제날부터 3년
  └벌금형 : 확정된 날부터 1년

- 한편,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판결시점이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제한기간을 선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여부 점검 개요

□ 점검 개요

○ **(내용)**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 점검

○ **(근거)** 「아동복지법」 제29조의4,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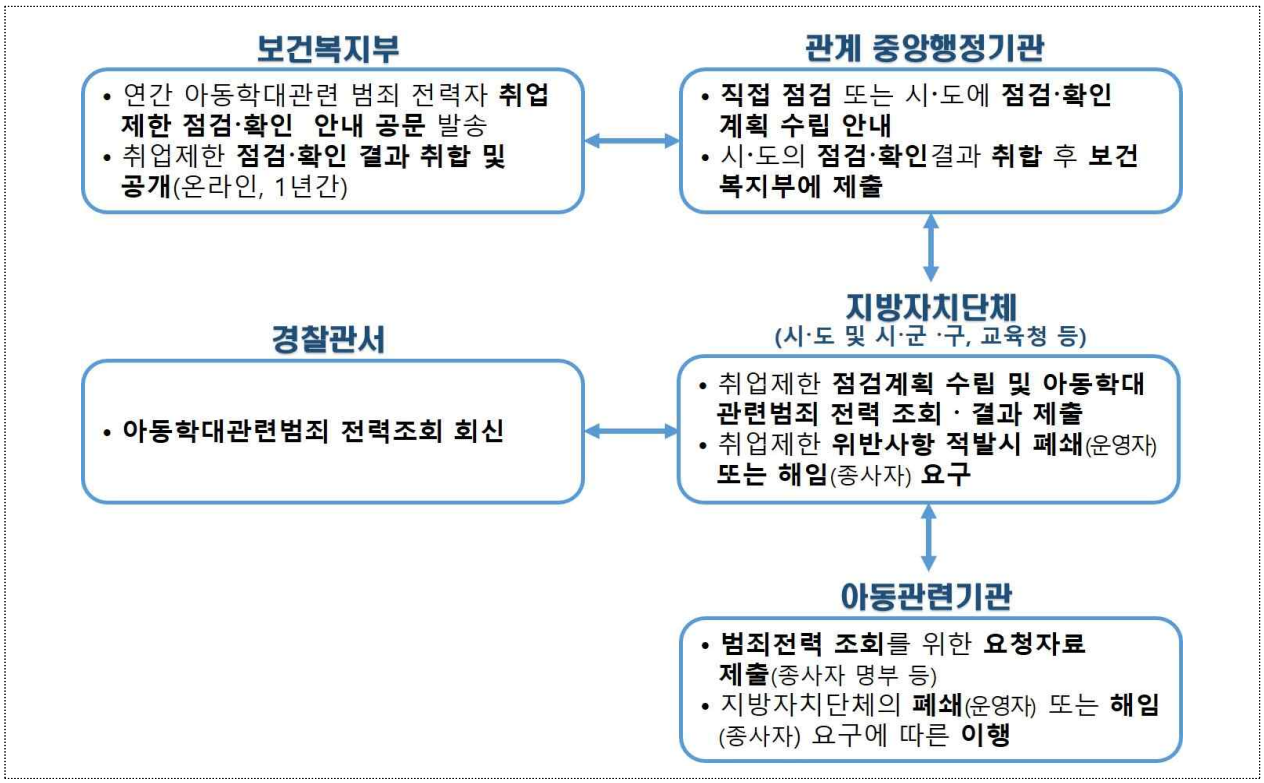
○ **(점검의무자)**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주기 및 방식)** 연 1회 이상,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또는 경찰청과 직접 연계된 시스템 사용

○ **(점검 대상)** 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자·종사자

○ **(점검 후 조치사항)**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① **취업자 등 해임 또는 기관 폐쇄 요구** ② 해임 또는 폐쇄 요구 **불이행시 경우 i)직권 폐쇄 또는 등록·허가 등 취소하거나 ii)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점검 체계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3 아동학대관련범죄 종류

관련법령	아동학대관련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나.「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다.「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라.「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바.「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자.「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카.「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타.「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1조(영아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4조(미수범) 전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

붙임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기관

소관부처	아동관련 기관
교육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동법 제28조에 따라 **학습 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동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동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 직접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에 한정)('19년 시행)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동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동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동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동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동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법 제30조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동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법무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험할땐 119 힘겨울땐 129